

김유미 연구원

요약

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금융시장의 충격은 퇴직연금 자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개인들의 투자, 연금 가입 의사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주어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 OECD는 각 국이 개인의 노후소득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립금의 부분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고,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권고함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충격은 퇴직연금 자산 변동성 확대, 고용불안에 따른 퇴직연금 기여 약화, 종신연금 수익성 하락 등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-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퇴직연금 자산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손실회피를 위한 펀드 변경, 중도 인출 등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감소를 유발함
 -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삭감, 해고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기여금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음
 - 또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종신연금의 수익성을 악화시켜, 퇴직연금 적립금을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들의 투자, 연금 가입 의사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 또한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¹⁾
 -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대수명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종신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나,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을 경험함으로써 기대수명에 대한 과소평가가 심화될 수 있음
 - 기대수명에 대한 과소평가는 특히 은퇴가 임박하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,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계좌에서 긴급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
 - 사람들은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에 단기주의 성과를 고려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임²⁾
 -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미래의 현금흐름보다 현재의 현금흐름을 위해 연금

1) Deloitte(2020), "The future of retirement- Opportunities for product innovation in the retirement income market"

2) Sheila Bair(2011. 7), "Lessons of the Financial Crisis: The Dangers of Short-Termism",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& Financial Regulation

자산을 감소시키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내 국고채와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

○ OECD 주요국은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이 단기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충격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음³⁾

- 미국, 영국, 독일, 칠레 등은 단기적인 퇴직연금 자산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펀드 변경이나 중도 인출이 은퇴 이후 노후소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림
 -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 및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잃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음
-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충분한 지급능력을 갖추도록 감독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자산 수급권 우려를 해소하고 있으며, 퇴직연금 가입 현황 및 관련 사항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
- 영국, 스위스,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임시휴직자에게 실업수당(Furlough) 등을 제공하여 퇴직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

○ 한편 미국과 호주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, OECD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장기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

-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 패키지법(CARES)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퇴직계좌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긴급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3년간 분납하도록 하였으며, 401(k) 계좌 잔액의 50%(최대 5만 달러)까지 담보 대출을 허용함⁴⁾
 - 미국 Vanguard 조사 결과 500만 DC형 가입자 중 약 2%(2020년 5월 기준)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들 중 4%가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인 10만 달러를 인출하였음⁵⁾
- 호주는 소득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 개인의 연금 계좌에서 최대 20,000호주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하였으며, 인도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를 위한 부분 인출을 허용함⁶⁾
- 한편, OECD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제한적인 중도 인출 허용이 단기적인 경제 충격으로부터 가계의 재무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미래 노후소득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함

○ OECD는 각국이 개인의 노후소득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립금의 부분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고, 퇴직연금 사업자가 충분한 지급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금융규제 운영하되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함

3) OECD(2020. 6), "Retirement savings in the time of COVID-19"

4) THE TAX ADVISER(2020. 11. 1), "Early distributions from retirement plans related to COVID-19"

5) Vanguard(2020), "How america saves 2020: the cared act"

6) BRINK(2020. 10. 19), "Covid-19's impact is rippling through pension systems around the world"